

이·미용업소 거리두기 핵심방역수칙 의무

- 대상 : 이·미용업
- 적용기간 : 2022. 1. 3. (월) 0시 ~ 별도 안내시까지
- 위반 시 : 과태료 부과 및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등
- 위반 당사자 : 10만원 / 관리·운영자 : 1차 150만원, 2차 300만원
- 핵심방역수칙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의무 적용	① 방역수칙 게시·안내	
	- 기본방역 수칙 게시·안내 *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게시 및 안내	방역수칙 준수
	② 출입자 명부 관리	
	- 모든 출입자의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이용** - 확인 및 안내 - 출입명부는 4주 보관 후 폐기	모든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 전화 체크인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**
	*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포함, 공무상 출입인 경우,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성년인 보호자 동반 시 14세 이하의 작성 제외 가능, 수기명부는 추후 폐지 예정 **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(거주지), 전화번호 또는 개인안심번호 기재	
	③ 마스크 착용	
	- 관리자·종사자는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 착용 * 음식물 섭취 시 예외	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
	④ 밀집도 완화	
	※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를 도입(접종완료자 등만 입장)하는 시설의 경우, 인원 제한 없음	
	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준수 및 안내	신고허가 면적 4㎡당 1명 준수
권고 사항	⑤ 음식섭취 금지	
	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 안내	물·무알콜 음료 외 음식물 섭취 금지
	⑥ 방역관리자 지정·운영	
	- 방역관리자 지정 - 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(권고)	-
권고 사항	(대화자제) 부득이 이용 중 마스크 착용이 불가한 경우, 대화 자제 (환기) 일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(소독) 일 1회 이상 소독(공용물품, 손잡이, 난간 등) (시설 내 거리두기) 시설 내 2m(최소 1m)	권고사항 준수

구분	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 수칙	이용자 수칙
	◦ (공용시설) 흡연실 등은 공용공간 수칙 적용	
기타	※ 접종증명·음성확인제 도입 시 아래 사항 준수	
	◦ 모든 출입자로부터* 입장 시 접종완료 확인 - (접종완료자) 전자증명서(Coov, QR), 종이증명서**, 신분증에 부착된 예방접종스티커, 완치자 - (미완료자, 예외자) 입장 시 아래 내용 확인 1) PCR음성확인자: 문자통지서,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 2) 예외자***: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, 18세 이하인 자는 학생증 등 ◦ 접종완료자 등 외 이용금지 조치 및 안내	◦ 접종완료 및 음성/예외 등 확인 협조
	* 관리자·운영자 및 종사자 제외 및 공무상 출입인 경우 신분표시 증표 제시로 갈음 ** 접종완료 등 관련 각종 증명서·확인서 등 발급대상, 방법 등 제반사항은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름 *** 18세 이하인 자(2022.3.1.부터는 11세 이하인 자),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※ 대상연령 확대 계도기간: 2022.3.1.~2022.3.31.(1개월)	

□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

관리자·운영자 수칙	참석자 수칙
▶ 다중이용시설 관리자·운영자는 아래 사항 모두 준수 ①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입장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의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것인지 확인 ② 시설 내 이용객이 5인 이상 모여 있는 경우, 사적 모임인지 확인 ▶ 위 ①, ②경우를 비롯하여 이용객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의심되는 경우, 관할 지자체에 즉시 신고 내지 퇴거 조치	▶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* (제외) 동거가족이 모이는 경우, 아동·노인·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,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, 스포츠 영업시설에서 운동을 위해 모이는 경우 등 ▶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및 이용 금지

※ ‘이용자’ 라 함은 관리자·운영자·종사자·이용자 등 해당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자를 의미

□ 문의 : 남동구보건소 식품위생과 공중위생팀 032-453-2630

남 동 구 청 장

